

# 명예교수규정

- 제정 : 2008. 12. 18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7. 8. 3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은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다.

1.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정년퇴직한 자로서 교육 및 학문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
2. 국내외 타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정년퇴임한 자로서 본교에서 교육에 종사할 자.
3. 특수분야의 권위자로서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

**제3조(추대절차)** 명예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추대한다.

**제4조(구비서류)**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피추천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명예교수 신청서
2. 명예교수 공적조서
3. 기타 필요한 서류

**제5조(처우)** ①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 할 수 있으며, 보수는 매년 총장이 정하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명예교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명예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무)** 명예교수는 주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, 6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다.

**제7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4-1-11 명예교수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